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09. 12. 14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주 문

“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”을 원안 의결하도록 함.

2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「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」의 제명이 바뀔 경우 의안의 성격 변경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.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”을 원안과 같이 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	번 안
<p><u>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</u></p> <p>1. 제안이유 <u>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</u></p> <p>2. 건립 배경(생략)</p> <p>3.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증축계획(생략)</p> <p>4. 건립 재원 확보 방안(생략)</p> <p>5. 법적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, 주차장법시행규칙 ○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 ○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</u> ○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</u> <p>6. 행후추진 계획(생략)</p> <p><u>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-2010년도관리계획총괄표(생략)</u> <u>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</u></p>	<p><u>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안</u></p> <p>1. 제안이유 <u>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</u></p> <p>2. 건립 배경(원안과 같음)</p> <p>3.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증축계획(원안과 같음)</p> <p>4. 건립 재원 확보 방안(원안과 같음)</p> <p>5. 법적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장법, 주차장법시행령, 주차장법시행규칙 ○ 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 ○ <u>삭제</u> ○ <u>삭제</u> <p>6. 행후추진 계획(원안과 같음)</p> <p><u>붙임 삭제</u> <u>삭제</u></p>	<p><u>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</u></p> <p>1. 제안이유 <u>(원안과 같음)</u></p> <p>2. 건립 배경(원안과 같음)</p> <p>3. 염리제2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증축계획(원안과 같음)</p> <p>4. 건립 재원 확보 방안(원안과 같음)</p> <p>5. 법적근거 <u>(원안과 같음)</u></p> <p>6. 행후추진 계획(수정안과 같음)</p> <p><u>붙임 (원안과 같음)</u> <u>(원안과 같음)</u></p>